

LPG 가격담합에 소비자 집단소송

공정위, 일반 소비자 소송은 처음 ... 별도의 규정 없어 구제여부 주목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최대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한 LPG(액화석유가스) 가격담합 사건에 대해 일반 소비자의 집단소송이 제기된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일반인 27명을 원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예정으로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 소속 나순철 변호사는 “이번 주 안으로 원고 모집을 마치고 늦어도 7월 말 소비자 집단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담합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하청기업들이 담합기업을 상대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적은 있으나 일반 소비자(기업)들이 소송을 내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집단소송 관련법규는 주가 조작이나 분식 회계, 허위 공시 등으로 해당기업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투자자 집단소송을 인정하고 있지만, 증권 외에 다른 분야의 집단소송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7/06>